

수신: 기소장 2000.8.17
 발신: 함마강 동주
 수신: 김 마기

기소장 초안 2000.8.17

- 2 -

남북공동 검사단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진법법정 현장 제11조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의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

피고인 일본천황 히로히토와 아래에 열거된 그 외 개인들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태평양의 여러지역에 이른바 '군'위안소'를 입안, 설치하고 운영하여 수 십만 명의 조선여성들을 이른바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하고 아래에 적시한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 상해, 신체질단, 고문, 감금, 살해와 기타 비인간적이고 잔학한 대우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성노예로 바트린 행위를 명령, 고무·선동하고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가하여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현장 제2조 1항의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남북공동 검사단은 또한 2000년 일본군성노예 국제여성진법법정이 다음의 관할하고 선언한 것을 요청한다:

- (1)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위반한 일본군성노예제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사죄, 손해배상,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배상할 의무를 진다.
- (2) 다른 국가들의 정부들도 또한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관련한 국제범죄를 저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이들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남북공동 검사단이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다.(추가 정리 필요)

일본천황 히로히토(裕仁, 1926-1989.1) :

하타 훈로쿠 (畑俊六將領): 1911년 3월부터 44년 11월까지 상급부대원 식나와전
 군의 사령관

데라우치 히사이치(寺内壽一): 1911년 11월부터 1914년까지 남방총군 사령관 (타바
 을 참조)

후게즈 요시지로 (柳津英治郎): 1939년 9월부터 1944년 7월까지 관동군사령관,
 대상

아마다 오쓰조 (山田乙三): 위 관동군 사령관의 후임, 대장

버마의 경우

조선군사령부 - 버마정 조선인'위안부' 동원자 관여

기소장 초안 2000.8.17

- 3 -

총독부 1937-39년까지 도항관련부분.

기소장 초안 2000.8.17

- 4 -

목차

들어가기

제1부 개인의 형사책임

I. 피해자 - 일본식민지배하의 여성

II. 범죄 ^{사실} 일본군성노역 ^{범죄}

1. 조선에서의 '위안부'의 강제동원

(1) 배경

- 1) 일본의 한국지배체제
- 2)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식민지: 통제와 동원

(2) 일본군'위안소'제도의 수립과 전개

- 1) 일본군'위안소' 정책 전개의 시기구분
- 2) 군'위안소'의 원초적 형태: 1905-1937
- 3) 군'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시행: 1937년말 이후

(가) 일본군과 육군성의 군'위안소' 정책

- ① 각 파견군의 설립지시
- ② 육군성의 직접지시
- ③ 육군성의 군'위안소' 사전 계획
- ④ 육군성의 총체적 기획

(나) 다른 일본 정부기관의 참여: 외무성, 내부성

(다)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의 협조

(3)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형태

- 1) 군'위안소'의 성격
- 2) 군'위안소'의 설립과 경영

(가) 시작단계: 군에서 직접 설립·경영

(나) 전환의 대대적 진출

(다) 후기: 다시 군의 직접 설립

(라) 패전 직전의 시기: 혼란

(4) 조선인'위안부'의 강제동원의 범죄성

- 1) '강제동원'의 정의
- 1) 조선에서의 노동력 동원과 '위안부' 동원
- 2) 조선인'위안부'의 동원경로

기소장 초안 2000.8.17

- 5 -

3) 강제동원의 방법

(가) 사기

(나) 납치

(다) 여성인신매매

(라) 강간, 상해와 기타 범죄

(5) 소결

2. 조선인 '위안부'의 이송과 일본정부, 군부, 식민당국의 관여 - 추방(deportation)

(1) 도항에 대한 일본의 국가통제체계의 확립

(2) 군 '위안부' 수송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상해파견군 육군 '위안소'의 설치과정

2) 남지파견군 군 '위안소'의 설치과정

3) 야마노(天野)부대의 군 '위안소' 개설과정

4) 1940년 5월 7일의 '위안부'의 도항에 관한 각의결정

5) 비마 군 '위안소'의 경우

(3) 도항 중의 군 '위안부'의 노예적 상태와 이들에 대한 범죄

(4) 소결

3. '위안소'에서 자행된 범죄

(1) 조직적 강간

1) '위안소'의 체제

2) '위안소'의 구체적 형태와 규모

3) '위안소'의 이용과 관리

(가) 사용자와 관리자

(나) 위안소 규정

(다) 감독·단속

4) 강간의 반복성

(2) 노예화

(3) 고문

(4) 강제유산과 유아살해

(5) 불임수술

(6) 성병 감염

(7) 폭행, 상해, 기타 폭력 행사

(8) 살해

(9) 강제결혼

기소장 초안 2000.8.17

- 6 -

4. 종전 직후에 자행된 범죄

- (1) 전장에서의 유기
- (2) 살해
- (3) 학살(mass killing)
- (4) 한인'위안부'에 관한 증거인멸

6. 5. 일본군성노에 범죄의 부인, 은폐, 왜곡

II 의 5로 함=한

III. 일본군성노에 피해여성의 고통

1. 직접적인 피해

- (1) 일본군성노에로부터 직접적으로 야기된 육체적 고통
- (2) 정신적 고통: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 1) 심리평가 진행 일정
 - 2) 심리검사 도구와 분석 방법
 - 3) 심리검사 분석결과
 - 4)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

2. 귀국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50년간의 침묵

- (1) 성노에 생존자들의 귀국후 상황
 - 1) 고향으로부터의 단절
 - 2) 가족연결망의 단절
 - 3) 생존조차 어려운 생활환경
 - 4) 정상적 여성으로서의 삶 불가능
- (2) 후유증
 - 1) 초기: 기억하나 침묵
 - 2) 장기적 후유증: 침묵과 집합기억의 상실
 - 3) 침묵에서 오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나?
- (3) 침묵: 왜 그토록 말하기 어려웠나?
 - 1) 생활환경의 요인: 가족관계 단절, 어려운 생활환경
 - 2) 문화적 요인: 정절 이데올로기
 - 3) 언어적 요인: 정체성 혼란과 언실화의 어려움
- (4) 침묵에서 증언으로: 어떻게 말하게 되었는가?
 - 1) 신고의 제기

기소장 초안 2000.8.17 - 7 -

2) 증언동기 및 과정

3) 여건을 마련한 배경요인: 정대협 의 역할과 지원법 제정

(가) 정대협 결성 및 활동: 법적 투쟁과 담론 확산

(나) 정부차원의 지원체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제정

과 시행

(5)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후유증

1) 신고 및 증언 이후의 생활: 나아진 생활환경

2) 말하기, 기억회복과 새로운 후유증

(6) 소결

IV. 법 적용

1. 인도에 반하는 죄의 규정

(1) 추방

(2) 강간

(3) 고문

(4) 노예화

(5) 기타 비인간적 행위

(6) 살해

(7) 불살/발살

(8) 박해

(9) 집단학살죄의 구성어부

2.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

(1) 한국에 국제인도법 적용의 근거: 일본의 한국지배의 성격

(2) 국제인도법의 적용

(3. 가능한 법적 항변의 검토와 배제)

V. 결론

(기소내용 요약)

제2부 국가책임

I. 사실의 주장

I. 피해자

II. 피해자

III. 피해자

IV. 피해자

기소장 초안 2000.8.17

- 8 -

II. 일본의 국제법상의 책임

1. 국가책임의 부인

2. 적용국제법규와 일본의 국제책임

- (1) 국제책임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과 일본의 국가책임
- (2)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 위반
- (3)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법 위반
- (4) 강제노동금지협약의 위반
- (5)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한 국제형사법 위반
- (6) 국제인도법의 위반

3. 일본의 국가책임의 내용과 해제방법

- (1) 시정
- (2) 진상규명
- (3) 원상회복 - 명예회복, 생존자 본국송환, 유골송환
- (4) 기념관, 박물관, 문서보관소의 설치문제
- (5) 손해배상
 - (가) 한일청구권협정
 - (나) 일본소송
- (6) 처벌

III. 다른 국가들의 책임

1. 범죄범을 방지할 의무

- (1) 연합군의 전범처리정책과 일본군 전쟁범죄의 처리
- (2) 각국의 책임을 위한 노력과 한계

2.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보할 의무

3. 피해자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

결론

부록